[별표 18] 고압가스 수입요령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가스 수입요령

품 명	수입 요령
상용온도 또는 35℃에서 게 이지 압력이 0.2腡이상인 액 화가스	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상용온도 또는 35℃에서 게 이지 압력이 1MB이상인 압축 가스	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15℃에서 게이지 압력이OPa 를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	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35℃에서 게이지 압력이 0Pa 를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 화시안화수소·액화브롬화메 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	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